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8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4월 29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, 이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제7호, 제8조, 제10조, 제11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조와 안 제6조제7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
안 제4조제1항 중 “기재하여야”를 “적어야”로 하고,
안 제8조 중 “해태한”을 “게을리한”으로 하며,
안 제10조와 안 제11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<u>의한</u>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정 관)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기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정 관) ① ----- ----- <u>적어야</u>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자본금)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<u>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자본금의 1/2미만의 범위 내에</u></p>	<p>제5조(자본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는 회사</u></p>	<p>제5조(자본금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6. (생략)
7.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.
단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.
8. (생략)

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 대표이사 및 임원은 「상법」 제39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10조(대행사업의 시행) 회사는 국가·시·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

가 발행한 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(사업) (현행과 같음)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(현행과 같음)
8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대행사업의 시행)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업) (개정안과 같음)

1. ~ 6. (개정안과 같음)
7. ----- 따른 -----.
8.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 ---

-- 게을리한 -----.

제10조(대행사업의 시행) -----

<p>우 상호 위탁계약에 <u>의한다</u>.</p> <p>제11조(사업연도)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<u>의한</u> <u>다</u>.</p>	<p>제11조(사업연도) (현행과 같음)</p>	<p>----- <u>따른다</u>.</p> <p>제11조(사업연도) -----</p> <p>----- <u>따른</u> <u>다</u>.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

안 제4조제1항 중 “기재하여야”를 “적어야”로 하고,

안 제5조제2항의 “서울특별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는 자본금의 1/2미만의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있다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의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”로 하며,

안 제6조제7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

안 제8조 중 “해태한”을 “게을리한”으로 하며,

안 제10조와 제11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<u>의한</u>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정 관)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기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정 관) ① ----- ----- <u>적어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자본금)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<u>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자본금의 1/2미만의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자본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6조(사업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관광진흥법에 <u>의한</u> 관광사업. 단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.</p>	<p>제6조(사업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
8. (생략)

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

대표이사 및 임원은 「상법」 제39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10조(대행사업의 시행) 회사는

국가·시·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

제11조(사업연도) 회사의 사업연

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8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

----- 게을리한 -----

-----.

제10조(대행사업의 시행) -----

따른다.

제11조(사업연도) -----

-- 따른다.